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기관등의 부당한 예술 활동 간섭·방해 또는 지시 금지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28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기관등의 부당한 예술 활동 간섭·방해 또는 지시 금지 (안 제5조제7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5. 2. 13.

다. 회 부 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기관등의 부당한 예술 활동 간섭·방해 또는 지시 금지 (안 제5조제7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국가기관등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 ⑥ (생략) <u><신설></u>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5조¹⁾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문화다양성의 보장, 예술의 검열 금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예술지원사업 결정에서의 차별 금지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국가기관등²⁾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는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등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예술인권리침해 행위³⁾는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⁴⁾에 따라 신고, 조사, 구제조치

-
-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 4)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2조(구제조치)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수사의뢰
2. 행정처분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3조(시정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및 제38조제3항에서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시정방안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시정 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및 시정권고·명령의 대상이 됨.

- 제7조⁵⁾는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가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 제8조·제9조 및 제11조⁶⁾는 예술지원사업에서 국가기관등이 합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

리적 이유 없이 예술인을 차별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거나,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간섭하는 것을 금지함.

- 제13조제1항제3호7)는 국가기관등이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여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

○ 개정안은 최근 가수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의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국가기관등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지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으로, 국가기관등에 의한 예술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7)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전부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현행법 제7조,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제3호 등 조항에서 이미 국가기관등이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지시·간섭·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조문간 중복이 우려되나, 개정안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라는 포괄적 범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지시·간섭을 금지하여 다른 조문과 규율 범위의 차이가 있고, 국가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 규정임을 고려할 때 입법적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4